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3년 2월 1일

제안자 : 문화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가. 조문의 제20조제10호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20조제10호의 조문을 수정함.

3. 수정안: 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: 없음

6. 수정안 본문: 붙임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10호 중 “운영계획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0조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 10. · 11. (생략)	제20조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~ 9. (생략) 10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<u>운영계획</u> 및 연계 사업 11. ~ 12. (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)	제20조(사업) ----- -----, 1. ~ 9. (생략) 10. ----- -- <u>운영</u> ----- - 11. ~ 12. (개정안과 같 음)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

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재정지원) 도지사는 경북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, 교육,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공무원이 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

요한 경우
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경상북도민
2. 국가보훈대상자
3.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
4. 다자녀가정
5.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

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명의를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명의로 본다.

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 10. · 11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0조(사업)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</u> 11. · 12. (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) <u>제21조의2(재정지원) 도지사는 경북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에 전출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27조의2(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등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 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, 교육,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 2. <u>공무원이 문화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 3. <u>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</u>

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
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공연 등 콘텐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경상북도민

2. 국가보훈대상자

3.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

4. 다자녀가정

5.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
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